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11. 21.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과

의안 제659호로 2025년 11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도로법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공공조형물과 공익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켜 도로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주요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책임 있는 도로 행정재산 관리를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추가(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 나. 띠어쓰기 정비(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3) 인권영향평가: 별도 의견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25. 10. 2.~10. 22./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정 배경 및 취지

○ 현재 영등포구에는 문래창작촌, 전통시장, 영종로 등 주요 도로변에 지역의 정체성과 특색을 반영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는 공공조형물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한 점용허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한편,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공익성·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조례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어, 본 개정안의 법적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국토교통부 「도로점용 법령 및 사례해설」(2023. 3.)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작물을 외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12호에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공작물 등에는 제한이 없다고 해석된다.

- 또한, 영등포구에는 매년 다양한 지역축제 및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행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무대·천막·안전관리대기소·단속초소 등과 더불어 교통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등 공익적 목적의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 근거 역시 미비한 실정임.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공공조형물과 축제·행사 시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의 시설물에 대해 도로점용허가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도로 내 설치되는 공공조형물 및 행사시설의 합법적·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

- 안 제2조(정의)는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한 것으로,
 - 제5호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조형물로서,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과 상징조형물(동상·탑·기념비 등)을 포함함.
 - 제6호는 교통안전·질서유지 등 공익 목적의 시설물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포함한 것으로, 설치 주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단·출자·출연기관으로 한정하여 공공성 및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임.
 - 이처럼 도로점용허가 대상의 확대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 따라 '공익성 및 안전성 확보'를 전제한 경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의 위임에 따라 공공조형물과 공익 목적 시설물의 도로점용허가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설치·관리된 시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아울러 축제 및 행사 시 임시 설치되는 초소·무대 등 공익 시설물 또한 허가 절차에 따라 설치·운영함으로써 합법성 및 행정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공공조형물의 설치가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유지·관리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목적·위치·관리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곳에 적정 규모로 조성·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 자료

1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 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

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봇대·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을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